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6
----------	------

제출년월일 : 1996. 2.  
제출자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안))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 회의수당지급기준을 회기중인 공휴일에도 지급하고 여비지급 기준금액을 규정에 맞춰 증액코자 함.

## 2.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
- 국내여비규정 개정(95.12.29)

## 3. 주요골자

- 회의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 단서 신설)
-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출장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및 식비기준액 개정(별표1) 부분 개정)

4.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1]의 의장·부의장의 숙박비란 중 “20,700”을 “37,500”으로 하고, 식비란 중 “11,000”을 “25,000”으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란 중 “16,200”을 “18,000”으로 하고, 식비란 중 “10,500”을 “18,00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의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제4조(회의수당지급) ① .....	..... ..... .....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u>20,700</u>	<u>11,000</u>
의원			<u>16,200</u>	<u>10,500</u>
구	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현행과 같음"	<u>37,500</u>	<u>25,000</u>
의원		"	<u>18,000</u>	<u>18,000</u>